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48 호

2000 년 10 월 21 일 토 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0-29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39호(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5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 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6호(공유토지분할조서의결공고) ----- 1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7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8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 1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9호(전문건설업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0호(공사입찰공고) -----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1호(공시송달공고) ----- 2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2호(부동산중개업자행정처분에대한 기준규칙중개정규칙(안)공고) -----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3호(부동산중개업자위반자과태료 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공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4호(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 4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6호(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 46
설치및운영규정(안)입법예고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7호(공시송달공고) ----- 47

중앙·시행정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78호(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고시) ----- 5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0-405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인천대공원) ----- 51
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0-2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운연동, 소로1-1호선외 5개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032-453-2683) 및 장수서창동사무소(☎032-453-28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0. 10.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인천도시계획결정(도로)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고
	종 류	류 별	번 호	폭 원 (M)					
신 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254	중로3-184호선	중로3-69호선	
신 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293	중로3-69호선	소로3-3호선	
신 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215	중로3-69호선	소로1-1호선	
신 설	소로	3	2	6	국지도로	76	소로3-1호선	소로1-1호선	
신 설	소로	3	3	6	국지도로	509	중로3-69호선	소로2-1호선	
신 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130	소로2-1호선	소로3-3호선	

2. 결정 및 지적승인 도면 : 별첨(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3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만월복지회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할 때 이용자(주민)가 수탁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하여 만월복지회관 이용자(주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만월복지회관의 시설물 이용시 신청서 제출기한을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5조 제2항)

4.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0년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주소(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1008번지), 참조(사회복지과장), 전화번호(453-235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주소, 성명(기관명,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만월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10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허가) ①구청장 또는 수탁자관리자는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신청서(별표 1)를 사용개시 10일전에 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일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09, 소로1-8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453-2683) 및 건설과(☎453-25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0. 10.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로: 중로2-109호선, 소로 1-8호선
【명칭】 논현동 이삭·풍림⑩ 부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연장(L)= 290M, 폭원(B)= 10~15M
- 중로 2-109호선 : 연장(L)=110M, 폭원(B)=15M
- 소로 1-8호선 : 연장(L)=180M, 폭원(B)=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0.11. ~ 2000. 10.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별첨
8. 도시계획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토 지 조 서

【남동구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도로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총면적	성명	주 소	소	성명	주소	
①	논현동	33-111	잡종지	99	99	0	99	(주)태평주택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4-4번지				미등기
②	논현동	33-141	잡종지	47	47	0	47	이 용 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 송도아파트 108-202			별지(1) 목록 표 참조	
③	논현동	33-164	잡종지	122	122	0	122	(주)태평주택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4-4번지			별지(2) 목록 표 참조	
④	논현동	33-166	잡종지	69	69	0	69	이 용 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 송도아파트 108-202			별지(3) 목록 표 참조	
⑤	논현동	33-167	잡종지	13	13	0	13	이 용 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 송도아파트 108-202			별지(4) 목록 표 참조	
⑥	논현동	33-168	잡종지	72	72	0	72	이 용 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 송도아파트 108-202			별지(5) 목록 표 참조	
⑦	논현동	62-16	답	282	282	0	282	최병희	인천 남동구 논현동 99-2번지				
⑧	논현동	64	답	173	173	0	173	(주)태평주택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4-4번지				미등기
⑨	논현동	66-32	임야	883	883	0	883	이식중합건설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번지				

지 장 물 조 서

● 【남동구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도로개설】

연 번	소재지	물건의종류,구조	규격,용도	면 적		계	소 유 자		관계인주소 성명	비고
				폐임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①	논현동	경 량 철 골	창 고	96.0	291.0	387.0	이 용 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력키송도 아파트 108-202		
②	논현	배 나 무		13.0주	63.0주	76.0	최 병 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99-2번지		
계						463.0				

토지조서의 관계인 목록

별 지 (1)

입원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성명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②	현	33-141	이용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송도아파트 108-202		이상모	대구 달서구 진천동 223-20번지 흥업산업사	가압류
						김이화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1-5백영아파트 102/1902	가압류
						유장봉	경남 창원군 대합면 장기리 1028-6번지	가압류
						천상화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107/811	가압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합명회사흥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근저당 권설정
						합명회사흥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지상권 설정
						한원택	인천 중구 운북동 843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청자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비취맨션 12/1002	근저당 권설정
						김순철, 하준환	경기 광주군 오폐면 신헌리 647-4마신헌타운 301/201 인천 남구 문학동 287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효진	서울 강남구 포이동 201-3 삼원빌라 301호	근저당 권설정
						김홍국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아파트 118/804	근저당 권설정

토지조서의 관계인 목록

별 지 (2)

일련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성명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③	논현 33-164		(주)태평 주택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54-4번지		(주)한미은행 (송의동지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1번지	근저당 권 설정
						상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번지	지상권 설정

토지조서의 관계인 목록

별 지 (3)

입권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성명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①	논현 33-166	이용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송도아파트 108-202		이상모	대구 달서구 진천동 223-20번지 흥업산업사	가입류
						김이화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1-5백영아파트 102/1902	가입류
						유정봉	경남 창원군 대합면 장기리 1028-6번지	가입류
						천상화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107/811	가입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합명회사홍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근저당 권설정
						합명회사홍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지상권 설정
						한원택	인천 중구 운북동 843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창자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비취맨션 12/1002	근저당 권설정
						김순철, 하준환	경기 광주군 오포면 신흥리 647-4마신흥타운 301/201 인천 남구 문학동 287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호진	서울 강남구 포이동 201-3 삼원빌라 301호	근저당 권설정
						김홍국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아파트 118/804	근저당 권설정

토지조서의 관계인 목록

별 지 (4)

입권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⑤	논현	33-167	이용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08-202	이상보	대구 달서구 진천동 223-20번지 흥업산업사	가업류
					김이화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1-5백영아파트 102/1902	가업류
					유장복	경남 창원군 대합면 장기리 1028-6번지	가업류
					천상학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107/811	가업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남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합명회사흥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근저당 권설정
					합명회사흥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지상권 설정
					한원택	인천 중구 운북동 843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청자	인천 중구 향동7가 27-107 비취맨션 12/1002	근저당 권설정
					김순철, 하준환	경기 광주군 오폐면 신흥리 647-4마신흥터운 301/201 인천 남구 문학동 287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효진	서울 강남구 포이동 201-3 삼원빌라 301호	근저당 권설정
					김홍국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삼원아파트 118/804	근저당 권설정

토지조서의 관계인 목록

별 지 (5)

입원 번호	동 명	지 번	소 유 자		성 명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⑥	논 천 33-168	이용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력키송도아파트 108-202			이상보	대구 달서구 진천동 223-20번지 흥업산업사	가업류
						김이화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1-5백영아파트 102/1902	가업류
						유장봉	경남 창원군 대합면 장기리 1028-6번지	가업류
						천상학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2-3 경남아파트 107/811	가업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인천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압류
						합명회사흥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근저당 권설정
						합명회사흥성상호 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2가 16-22번지	지상권 설정
						한원택	인천 중구 윤북동 843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청자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비취맨션 12/1002	근저당 권설정
						김순철, 하준환	경기 광주군 오포면 신흥리 647-4마신흥타운 301/201 인천 남구 문학동 287번지	근저당 권설정
						이효진	서울 강남구 포이동 201-3 삼원빌라 301호	근저당 권설정
						김홍국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삼환아파트 118/804	근저당 권설정

용 지 목 록 조 서

용역명: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번호	토지소재		지목	면적		실제이용상황		주소		소성평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명	지번		공부면적	면입면적	현황	면적	주소				
1	논현동	66-50	임	177	177	도, 전	111, 66	여의도동13-25		이삭건설외1		
2	"	68-42	전	153	153	도, 전, 대	96, 39, 18	구월동 1154-4		태평주택외1		
3	"	68-68	전	28	28	도	28	"		태평주택	근저당권설정	
4	"	68-52	전	68	68	도, 전	63, 5	"		"		
5	"	68-72	전	6	6	전	6	논현동68-25		장경수		미동기
6	"	68-48	도	37	37	도	37	국		계무부		
7	"	68-50	전	233	233	도	233	구월동1154-4		태평주택외1		
8	"	68-69	전	62	62	도, 전	33, 29	논현동111		김서권		미동기
9	"	68-53	전	171	171	도	171	구월동1154-4		태평주택외1	근저당권설정	
10	"	68-63	전	144	144	도	144	"		"	지상권설정	
11	"	68-60	대	714	714	도	714	"		"	근저당권설정	
12	"	68-58	전	36	36	도	36	"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6호

분할조서의결공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의 의결에 있어 분할조서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오니 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공고기간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0년 10월 16일 ~ 10월 30일

2. 공고내용

㉠ 토 지 표 시						㉡ 신 청 인			㉢ 동 의 인 외 의 인
군·구	리·동	지 번	지목	면적(m ²)	분할후필지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남동구	만수동	111-118	대	165	3	김재식		만수동 111-118	김 재 식 외 2 인
남동구	만수동	111-126	대	112	2	김석배		만수동 111-126	김 석 배 외 1 인
남동구	만수동	111-139	대	148	3	홍동현		만수동 111-139	홍 동 현 외 2 인
남동구	만수동	111-155	대	106	2	이향숙		만수동 111-155	이 향 숙 외 1 인
남동구	만수동	111-156	대	152	3	윤귀중		만수동 111-156	윤 귀 중 외 2 인
남동구	만수동	111-161	대	92	2	한복순		만수동 111-161	한 복 순 외 1 인
남동구	만수동	111-180	대	84	2	엄복만		만수동 111-180	엄 복 만 외 1 인
남동구	만수동	111-196	대	128	3	주영희		만수동 111-196	주 영 희 외 2 인
남동구	논현동	111-142 111-140	대 대	375 90	2 1	김형욱		논현동 111	김 형 욱 외 2 인
남동구	고잔동	86-9	잡종지	648	4	김진덕		고잔동 129	김 진 덕 외 3 인
남동구	고잔동	129-7	전	493	2	이점순		고잔동 129-7	이 점 순 외 1 인
남동구	고잔동	129-8	전	850	5	박용제		고잔동 129-8	박 용 제 외 4 인
남동구	고잔동	130-다	타	1,160	6	한태식		고잔동 130	한 태 식 외 4 인

2000. 10.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7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접수일 (접수번호)	소매인 구분	지정번호	신		청		인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호	전화번호		
2000.10.11 (1344)	일반 소매인	2000-149	최영석		간석동 617-29	한성마트	442-4260		
2000.10.11 (1346)	일반 소매인	2000-150	이명열		고잔동 713-9	기성식당	817-8555		
2000.10.11 (1347)	일반 소매인	2000-151	신명옥		남촌동 610-3 (남동광진36B4L)	성화슈퍼	817-3505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8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건설업등록 자진반납에 따라 등록말소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0.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업 종	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창호공사업	인천 98-08-11	박홍식 (120111-0143686)	(주)중앙씨엠 아이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1-12	자진반납	2000.10.17.
토공사업	인천 남동 00-02-04	노재기 (120111-0190835)	이성건설(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71-2	자진반납	2000.10.17.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인천 남동 00-10-1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49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사항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행정 처분 통지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00.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 : 강진토건(주)외 52개 업체 [별첨내역]
2. 행정처분일 : 2000. 9. 18.
3. 행정처분사유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미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4. 유의사항
 - 영업정지업체는 2000. 11. 6일까지 남동구청 건설과에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여 영업정지사항을 확인받으시기 바라며 제출치 않을 시 영업활동으로 보아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건설과 (032-460-0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1	강진토건(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83-10-94	김창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11 (수정빌딩 605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	(주)두일산업	조경식재공사업 인천-83-18-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83-19-5.	주일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65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	두성건설산업(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83-07-8	윤석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0(산업유통 센타 비동 244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	상진토건(주) (전:충원토건(주))	토공사업 서울-89-02-1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89-10-23	최상혁 (전관국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8-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	(주)한성개발	토공사업 인천-89-02-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89-13-33	김윤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5-16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	(주)예창	실내건축공사업 인천-92-01-1	김혁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1-1 하나빌딩5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7	(주)문화건설	토공사업 인천-92-0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33	류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9-3 (우상빌딩301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8	중일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24	김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9-5 (뉴인천빌딩 505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9	(주)우창건설	토공사업 인천-92-02-3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2-13-6	구자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2-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0	삼도석재(주)	석공사업 인천-92-04-7	차상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56-1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1	동주토건(주) (전:고광토건(주))	토공사업 인천-94-02-37	최종률 (전:노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 원하빌딩 402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2	(주)성림기초건설 (전:부형건설(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94-07-3	박용봉 (전:김광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 구월빌딩 A동 (전: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1-3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3	신라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4-10-44	조대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9-5 뉴인천빌딩 301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4	신성조경	조경식재공사업 인천-94-18-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94-19-4	이봉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3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5	영보개발(주)	토공사업 인천 94-02-29	신용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9-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6	혜영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4-02-24	권경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2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7	삼정공영(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5-10-1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5-13-4	이석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74-1 영용 빌딩 2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 록 번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18	(주)에일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5-10-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5-13-7	고동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9	(주)은해건설	토공사업 인천-95-02-2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5-13-11	백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0	진보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7-10-1 토공사업 인천-92-02-34	노재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14 (대평원빌딩3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1	(주)태산공영	창호공사업 인천-94-08-3	차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2	(주)우창수중개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6-10-28 수중공사업 인천-96-17-1	구자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22-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3	삼육공영(주)	토공사업 서울-97-02-3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97-10-45	한운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1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4	경원건설(주)	토공사업 서울-92-02-2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92-10-268	박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67-2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5	웅비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24 포장공사업 인천-94-16-1	백상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0-1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6	(주)영신석재공영	석공사업 인천-92-04-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31	김홍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3-16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 록 번 호	대표자	영업정소제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27	진영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2	민운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54 (동일골프장내)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8	(주)신화종합개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74 포장공사업 인천-92-16-7 토공사업 인천-98-02-3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8-13-35	최양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19 태경빌딩 3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9	세운개발(주)	토공사업 인천-94-02-3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4-10-33	김원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5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0	(주)명소개발	토공사업 인천-92-02-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11	나명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280-1 (간석회관 4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1	청원기공(주)	강구조물공사업 서울-96-21-29	박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31-22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2	(주)동방토건	토공사업 충남-83-02-3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남-83-10-2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충남-83-13-31	백남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8-8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3	신일토건(주)	토공사업 서울-92-02-26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4-10-39	김중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2(창대장 터상가 1동208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4	공명개발(주)	미장방수공사업 인천-92-03-5	이항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0-2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5	성지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3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2-13-11	이상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8-3 (화남빌딩 4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6	천성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남-92-10-170	진병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9-1(왕송 빌딩 2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인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37	경인종합목재	창호공사업 인천-94-08-2	김정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10-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8	(주)덕산포장	포장공사업 전남-94-16-59	공재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7-8(거신 빌딩 7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9	(주)금강종합석건	석공사업 인천-95-04-2	유봉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53-4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0	(주)도성개발	창호공사업 인천-94-08-7	김종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7-13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1	한우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17	김도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12-15(2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2	(주)신한공영	창호공사업 인천-95-08-7	최승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461(창대시 장내 1동 210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3	대광산업(주)	철물공사업 경기-92-11-5	김정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6(공단 17블럭7롯데)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4	(주)남민건설	도장공사업 인천-92-05-7 철물공사업 인천-94-11-7	신기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39-18 (한국상가 201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5	(주)대성	철물공사업 인천-79-11-1 창호공사업 인천-83-08-45	김웅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9-7 (공단 159블럭8롯데)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6	극동기업(주)	철물공사업 서울-89-11-28	장태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8-10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47	신한건설	철물공사업 인천-92-11-7	김복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7-15 (공단156BL-16LT)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8	경신기업	철물공사업 인천-92-11-26	이인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9-12 (92블럭13롯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9	(주)아우산업	철물공사업 인천-94-11-10	김용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8-9 (공단88블럭10롯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0	(주)일진공영	조경식재공사업 인천-94-18-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94-19-1	조중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공단2단지 80블럭7롯트)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1	아이시스산업(주)	실내건축공사업 인천-98-01-6	이영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2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2	토국건설(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98-07-02	김진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77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3	송학환경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7-13-19	박양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6 강동빌딩 4층	영업정지 6월 (2000.9.18~ 2001.3.1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0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건축.설비)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금액 : 146,589,000원 (관급 없음)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6일(월) 17:00 남동구청 허가재무과
- 입찰일시 및 장소 : 2000년 11월 7일(화) 15:00 남동구청 지하식당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0. 10. 25(수) ~ 2000. 11. 6(월)(사회복지과)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00년 10월 25일(수) 14:00 (사회복지과)
- ※ 본입찰은 참여입찰과 상시입찰(우편입찰 불가)을 병행 실시하며, 상시입찰은 우리구 허가재무과(입찰실)에 비치된 “상시투찰함”에 2000.11.1~2000.11.6간 투찰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중 토.건 또는 건축업(면허) 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이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48.49호-2000.6.3)에 의한 시공 경험 및 경영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0. 11. 8.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면허증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1부 ⑥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이상)

※ 인천광역시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업체 : 등록증사본. 입찰참가신청서만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incheon.kr>)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허가재무과(453-22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경 리 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1호

공시송달공고

- 성 명 : 황 광 서
- 업소명 및 소재지 : 뉴스타게임랜드(등록번호 9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212번지의 3
- 주소 또는 거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527-6 103호
- 서 류 의 명 칭 :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 서 류 의 내 용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8조(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행정처분전 의견제출 안내

위의 안내문을 '2000. 10. 9.일자로 귀하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처분전 의견제출기간을 '2000. 11. 6.까지 변경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며, 아울러 상기 기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시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3조(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00.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2호

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안)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2000.1.28 (2000. 7.29시행))에 따라 종전의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동법제23조(업무의 정지처분)제3호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 요 내 용

-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를 "등록"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1호)
- 중개업법위반시 가중하여처벌 할 수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경감하여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함(안 제4조2항)
- 청문절차 제도의 조항을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함(규칙안 제6조)
- 별표의 각 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4. 의 건 제 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0년 11월10일 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 453-27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허가”를“등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그 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기준보다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허가”를“등록”으로하고, 동항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하여 제6조 및 제7조를 제7조 및 제8조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청문의절차)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별표(행정처분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현행 제1조와 같음)
제 2 조(처분의 종류) (생 략)	제2조(처분의 종류)(현행제2조와 같음)
1. <u>허가</u> 의 취소(생 략)	1. <u>등록</u> 의 취소.
2. (생 략)	2. (현행 제2호와 동일)
3. (생 략)	3. (현행 제3호와 동일)
제 3 조(처분의근거) (생 략)	제 3 조(처분의근거)(현행 제3조와동일)
제 4 조(처분의 기준) ① (생 략)	제 4 조(처분의기준)①(현행 제1항과동일)
<u>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표기준 보다</u> <u>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u>	<u>②그 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u> <u>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u> <u>인정될 경우에는 별표기준보다 경감하</u> <u>여 처분할 수 있다.</u>
1. <u>1년 이내에 동일사함을 2회이상 위반</u> <u>한 경우</u>	
2. <u>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우</u>	
3. <u>그 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u> <u>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u> <u>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기준보다</u> <u>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동일)
④ (생 략)	④ (현행 제4항과동일)
제 5 조(청문) (생 략)	제 5 조(청문) (현행 제5조와동일)
<u><신 설></u>	
제 6 조(청문통지등)① (생 략)	제 6 조(청문절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 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② <u>허가</u> 취소를 한 경우에는 즉시 <u>허가</u> <u>중을 회수</u> 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 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중 <u>당해사무소</u> <u>를 사용할수 없도록</u>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 7 조(청문통지등)①(현행 제6조와동일) ② <u>등록</u> 취소를 한 경우에는 즉시 <u>등록</u> 중을----- ----- -----
제 7 조(기록 및 보존) (생 략)	제 8 조(기록 및 보존)(현행 제7조와동일)

(별 지)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처 분 기 준			비 고
		내 용	1 차	2 차	3 차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1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1항)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2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법제22조 제1항제3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4. 법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4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5.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 사무소를 둔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6.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6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7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8. 최근 1년 이내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 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22조 제1항제8호	당 연 등록취소	등록취소			
9.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1호 (법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가능	6월	등록취소		
10.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 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 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 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1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1.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 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 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 도 금품을 받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2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2.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으로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3호)	등록취소 및6월이 내업무정 지 가능	6월	등록 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13.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4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1항)
1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5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1항)
15.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7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 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6.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법제22조 제2항제3호 (법제15조 제7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고 발 (법제38조 제2항)
17. 법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 취소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18. 법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등록취소			
19. 중개업자가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법제22조 제2항제6호	등록취소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20.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2호	등록취고 및6월이내업무정지 가능	6월	등록취소		
21. 법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4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1월 2월	3월 3월	6월 6월	
22.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법제16조 제1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1월	3월	6월	
23.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법제16조제2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능	1월	3월	6월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24.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 (법제16조 제3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5.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아니한 경우	법제23조제1항제5호 (법제17조 제1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6.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때에 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 (법제17조 제2항)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7. 법제16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3조제1항제5의2 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28. 감독상 필요한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나 또는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6호	6월이내 업무정지 가 능	1월	3월	6월	

[별표]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비 고
			1 차	2 차	3 차	
29.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 조사 또는 검사시 방해하거나 질문에 불응할 때	법제23조 제1항제6호	6월이내 업무정지가 능	1월	3월	6월	
30.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이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10호	6월이내 업무정지가 능	1월	3월	6월	
31.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11호	6월이내 업무정지가 능	1월	3월	6월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3호

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0.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2000.1.28) (2000. 7.29시행))에 따라 종전의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동법제39조(과태료)제1항제1호,3호 및 동법 동조제2항5호,6호,7호,12호,13호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 요 내 용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중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1항제1호,3호 위반자를 부과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39조제2항 각호의 부과대상자가 일부 삭제됨에 따라 부과대상자 완화조정.(안 제2조)
- 별표의 각 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의 “허가”를 “등록”으로 명칭변경함.(별지 3호,4호,5호서식)

4. 의 건 제 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0년 11월10일 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 453-27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2조제1 0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별표(과태료부과기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3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u>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u> <u>2. 법 제3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u>	제2조(과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u>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아 니한 자</u> <u>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u> <u>4.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u>

(별 지)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사 항	관련법규	처분규정 내 용	처 분 기 준		
			법 인 인 공 인 중개업자	공 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인 중개업자
1. 등록관청에 사무소이전 신고를 위반한 경우	법제12조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50만원	30만원	20만원
2. 휴업 및 폐업신고 위반의 경우	법제18조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40만원	20만원	10만원
3. 중개완성시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 본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 보증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 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증기간	법제19조 제5항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사무소내 등록증, 중개수수 료요율표, 공인중개사 자 격증,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 지 않은 경우	법제26조	100만원이하 의과태료	40만원	30만원	20만원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등록(자격증)번호		상 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 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구 금고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서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m²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개업자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영업소	등록증번호		상호	
	소재지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190mm×268mm

신문용지54g/m²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중 개 영 업 소	등 록 번 호		상 호	
	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부 과 관 청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190mm×268mm

신문용지54g/m²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4호

개별공시지가열람및의견제출요령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0년 9월 1일 현재의 토지이동(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00년 10월 21일 ~ 11월 9일
- 장 소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팀) 및 동사무소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2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0년 10월 21일 ~ 11월 9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지가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위와 같이 공고함.

2000. 10.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6호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0. 10.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명 칭 :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안)

2. 취 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므로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등 제반사항을 규정 함.

4. 의견제출

본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1월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453-237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57호

공시송달공고

서류의 명칭 : 처분사전통지서
서류의 내역 : “별 첨”
성명 및 상호 : 강 기창(비취이용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95-9

귀 업소에 대하여 2000년 9월 19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업소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하오니, 2000년 11월 16일 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할 것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0. 10.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453-2463)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환위65455 - 6021

시 행 일 2000. 10. 17

수 신 비취이용원 강 기창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명 칭)	강 기창(비취이용원)		
	주 소	구월1동 1195 - 9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커텐 설치) 2차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 영업정지 15일 예정		
5. 법 적 근 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남동구청	부서명	환경위생과(전화453-2463)
	주 소	인천. 남동. 만수6동 1008번지		
	기 한	2000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중양·시행정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78호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440-3372) 및 남, 남동, 부평, 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0.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시설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중학교		계양구 계산동 292-1번지 일원	12,626	
변경	초등학교	부현초교	계양구 계산동 292-1번지 일원	12,626	
기정	중학교		계양구 용종동 227-3번지 일원	12,004	
변경	고등학교	계양고	계양구 용종동 227-3번지 일원	12,004	
기정	초등학교		남구 학익동 산40번지 일원	14,300	
변경	고등학교	학익여고	남구 학익동 산40번지 일원	14,300	
기정	중학교		남구 학익동 39-3번지 일원	13,427	
변경	초등학교	인주초교	남구 학익동 39-3번지 일원	13,427	
기정	중학교		남동구 간석동 614번지 일원	9,846	
변경	고등학교	석정여고	남동구 간석동 614번지 일원	9,846	
기정	고등학교		남동구 만수동 1005-6번지 일원	16,232.3	
변경	중학교	만성중	남동구 만수동 1005-6번지 일원	16,232.3	
기정	고등학교		부평구 산곡동 180-356번지 일원	16,302	
변경	중학교	산곡중	부평구 산곡동 180-356번지 일원	16,302	
기정	고등학교		서구 백석동 65-3번지 일원	11,720	
변경	중학교	백석중	서구 백석동 65-3번지 일원	11,720	

☐ 토지조서 : 생략☐ 결정도면 : 생략. 끝.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00-4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인천대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인천대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녹지조경과(☎ 440-3675), 공원관리사업소(☎ 466-7282), 남동구청 도시지적과(☎ 460-0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0. 10.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운연동 관모산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가. 종 류 : 공원(도시자연공원)
 - 나. 명 칭 : 인천대공원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 가. 공원의 총면적 : 2,943,680㎡
 - 나. 사업시행면적 : 2,912,500㎡
4.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공원관리사업소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 1997. 10 ~ 2001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변경) :
 - 토지 : 장수동227-8번지(기타 공원내 편입토지 변경사항 없음)
 - 지장물 : 장수동 298, 307, 278, 280-3, 272, 93-3, 산36-2, 343-1, 454-1번지내 도시계획시설(공원)에 지촉되는 부분에 한함.(기타 공원내 지촉되는 지장물 변경사항 없음)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